

2021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 기 간 : 2021. 11. 1. ~ 11. 5. / 5일간
- 범 위 : 2018. 12. 1. ~ 감사일 현재
- 인 원 : 감사담당주사 등 4명

II 감사결과

1] 보조금 분야

1) 주민제안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 2019년(2건), 2020년(2건)에 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조사 및 교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이행 소홀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19950호(2016.12.28.)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계획통보 공문으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로 부당 법인에 대한 법적조치(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과태료 부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관련법을 위반한 47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업축산과-8443호(2018.8.23.) 농업법인 시정명령 사전 통보 공문 1회만 발송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2019.6.1.~12.31.)에서 6개 농업법인이 재차 동일한 관련법 위반으로 지적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였음.
- 2019년에 실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23개소, 해산명령청구 49개소가 발생하였고, 후속조치 처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후속조치 추진기간을 2020.6. ~

2021.12.로 계획하여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해산명령청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시정명령 23개소에 대하여 2020.6.19. 농업법인 시정명령 사전통보 이후 2021.10.5.에 이르러서야 농업법인 시정명령(2회) 사전통보를 하였고, 해산명령청구 49개소에 대해서는 2020.7.6.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 이행을 소홀히 하였음.

3) 농업법인 대상 보조사업 지원자격 검토 소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이 농업법인 지원요건 중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농업분야 재정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음.

4)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 수수료 환수 소홀

-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계약대행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입찰수수료 ***천원을 보조사업자에게 징구하지 않고 군의 재정으로 지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조례위반

1)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공급 관리 소홀

-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절차 없이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민간위탁 업무 및 관리 소홀

- 민간위탁기관 2개소는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위탁사항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 민간위탁기관 6개소는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홈페이지 미 공개 포함),
- 민간위탁기관 2개소는 협약서 상 수탁건물의 운영에 대해 인명재산상 책임을 '을'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가입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우리군에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한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명확하게 명기하지 아니했으며,
- 민간위탁기관 1개소에서는 체험시설 관리위탁 협약서 제5조(사용료)에 “***** 체험시설”의 사용료는 다음해 1월경 “갑”에게 일정금액(조수입의 14%)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사용료 세외수입고지서를 10월달에 발부하였으며 사용료 *,**,***원을 감사일현재(2021.11.5.)까지 징수하지 아니함.

3)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부적정

-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에는 “군수는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하고,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1조(위원회 기능)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음 각호는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2020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심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

3] 회계분야

1) 신용카드 발급, 보관·관리 소홀

-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상호 확인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4] 건설분야

1)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사업 추진 소홀

-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대하여 천정점검구 설치 13개소, 익스펜션조인트 커버(바닥, 벽체)를 설계도서예 따라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천원 상당액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성검사를 통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통합발주 가능공사 통합발주 노력부족

- 농업축산과에서 시행한 「●●●● ●●●●●●●● 신축공사」에 대해 사업시기 및 예산과목이 동일하여 1건의 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음.
- 농업기술과에서 시행한 「◇◇◇◇◇◇◇◇◇◇ 옥상보수(방수) 공사」 등 2건의 사업은 사업위치가 인근에 있고, 사업시기 및 예산과목이 동일하여 1건의 사업으로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같은 시공업체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한 사항으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행복농촌과에서 시행한 「△△△△△△△△△△ 옥상 파랏펫 후레싱 설치 공사」 등 3건의 사업,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체험숙소동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 시행」 등 2건의 사업, 「▽▽▽ ▽▽▽▽ 창조적 마을만들기 로프난간 설치공사」 등 2건의 사업, 「◆◆◆◆◆◆ 임대농장 관정공사」 등 2건의 사업은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같은 업체 또는 다른업체와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건설업 면허 적용 부적정

- ■■■■■에서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및 해당 건설공사 주공종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 면허 적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4) 건설공사 안전업무 추진 소홀

- ■■■■■에서는 「▲▲▲▲▲▲▲▲ 종합정비사업 ▼▼▼▼▼▼▼▼▼▼ 전력시설물 설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하여 대상액의 1.85%로 계상하여야 하나 2.93%로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 「▲▲▲▲▲▲▲▲ 종합정비사업 정자 설치공사」에 대해 시스템비계로 계획되어 있으나 안전에 취약한 이동식비계로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 ☆☆☆☆☆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시스템비계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시스템비계로 설치하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안전에 취약한 강관비계로 설계변경하는 등 공사감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복무분야

1) 공가 사용 증빙서류 미첨부

- 2018. 1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공가를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미첨부하여 총 10건의 공가를 신청, 사용한 사실이 있음.

2) 최종퇴청시 무인경비시스템 미작동

- 2018. 1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사보안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4회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퇴청을 하였음.

3) 기타분야

1) 자체감사(2018년) 지적사항 미이행

- 2018년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인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미구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미구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물품 수불부 미작성)” 3건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나
 -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농업축산과-7440 2019.3.16.)” 수립후 구성하지 않았고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농업축산과-7190 2019.3.5.)”수립후 이행하지 않았으며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상품권, 특산품 구입 물품수불부 미작성) 대해서는 2019. 7. 17. 이후 5건만 작성하고 이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